

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5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2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23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1999. 7. 23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사유

- 0 현행 보건소수가조례중 실효성이 없고 존치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규제완화로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0 검사, 시험 등을 위한 관계 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삭제함.
(안 제8조제3항)
- 0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반환 제한내용 개정함.(안 제8조제4항)
- 0 시험결과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함.(안 제10조)
- 0 시험성적서의 원본의 말소 및 이유공고 사항 삭제함.
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자체점검 결과 정비대상 사무로 채택된 안건으로, 현행 보건소수가조례 중 검사, 시험 등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지급에 따른 부담기준과 시험결과의 광고금지, 시험성적 원본말소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
- 0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게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0 1999. 7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